

「IBK 비대면 기업통장」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

- 상 품 명 : 「IBK 비대면 기업통장」
- 상품개요 :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한 법인전용 예금상품

2 거래 조건

- 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(2026.01.01.기준)

구 분	내 용
가입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리법인 ※ 주식회사 내에 25% 이상 최대주주인 19세 이상의 대표자가 직접 신청
가입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대면 전용 상품(SB톡톡+앱)
가입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대면 전용 상품(SB톡톡+)앱, 영업점 내방(수수료 발생)
가입금액 및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한없음
예금자 보호여부 [해당]	 <p>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1억원까지”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※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</p>
제한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• 질권 설정 : 불가능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
개설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표자가 법인 정보 확인을 위한 스크래핑 및 사진촬영 등 첨부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여 법인용 계좌 개설 신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확인정보 : 대표자 본인확인(휴대폰인증 등), 대표자 신분증확인, 대표자 태행계좌확인, 스크래핑을 위한 대표자 인증서(금융인증서, 간편인증서), 기업정보조회 등 - 제출서류 : 사업자등록증명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, 법인등기 사항전부증명서 • 계좌개설 신청 정보를 IFIS 통합단말을 통해 확인, 서류 스크래핑 확인을 거친 뒤, 승인 또는 거절 처리

구 분	내 용						
이자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[변동금리] 이 예금은 금액 구간 및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기준일 : 2025.10.29. 세전 / 단위 : %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금액구간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연이율</td> </tr> <tr> <td>1억원 이하</td> <td>2.50</td> </tr> <tr> <td>1억원 초과</td> <td>1.50</td> </tr> </table>	금액구간	연이율	1억원 이하	2.50	1억원 초과	1.50
금액구간	연이율						
1억원 이하	2.50						
1억원 초과	1.50						
이자지급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분기(3,6,9,12월)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가 •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구간별 이율을 적용 						
위법계약 해지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•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 						
자료열람 요구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 •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 • 저축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 						
세제혜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사항 없음 						
기타 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표자 외에 이체 등이 가능하도록 승인 직원에 서비스 권한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직원관리) 최종결재자가 직원등록 및 업무권한 등을 부여 - (이체) 권한 부여된 직원이 결재상신 후 최종결재자 승인 시 이체 - (결재관리) 상신/승인, 결재내역 조회 등 						

3 |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

-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22-79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ibksb.co.kr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 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계약체결 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(날인)하시기 바랍니다.

본인은 IBK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**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,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**